

일본의 CSC 협약가입의 의미와 시사점

이대성*, 이기복, 이영철, 임채영, 이영준, 이종희, 김영수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dslee@kaeri.re.kr

1. 서론

IAEA와 미국이 주도하는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은 최근 일본의 가입으로 그 발효요건을 충족하여 2015년 4월 16일에 발효되었다. CSC 체결국을 보면, 미국, 일본 등의 태평양 연안국가이면서 거대 원전 운영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태평양에 인접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않다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CSC 협약 가입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원자력손해배상의 특별원칙

원자력손해배상에 있어서 원자력산업에 고도의 원자력기술이 적용됨에도, 사고를 완전하게 막을 수 없으며, 그 사고의 피해범위가 국경을 초월하는 대형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서 원자력시설운영자에게 위험책임의 무과실 엄격책임원칙, 책임의 집중, 강제보험제도, 국가가입, 비차별주의, 재판관할권의 통일 등의 특별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원칙들은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에 공통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 위험책임의 무과실 엄격책임원칙

원자력사고발생시 원자력시설운영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원자력시설운영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킴.

- 책임의 집중

원자력산업의 공급자, 운영자, 운송자, 기기제작자 등의 여러 개입자들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원자력시설운영자에게 집중시킴으로서, 원자력사고 피해자 배상책임을 일원화하여,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지게 함.

- 강제보험제도

원자력시설운영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강제보험을 유지토록 하여, 피해자구제를 실질적으로 함.

- 국가가입

원자력손해가 심대할 경우 국가가 가입하여 그

사고 대처를 하도록 함.

- 비차별주의 및 재판관할권 통일

피해보상에 있어서, 국적, 인종, 출신, 지역 등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며, 당해 사고에 대한 사고지법원이 관련 모든 재판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함.

2.2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

원자력손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는 서유럽 지역체제인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on Nuclear Third Party Liability)와 IAEA 주도하의 비엔나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이 있음.

2.2.1 파리협약체제 (The Paris Regime)

서유럽중심의 체결국으로 구성된 파리협약체제는 유럽의 주요원전보유국에 의해 1968년 발효되어, 원자력손해배상의 특별원칙을 대부분 반영함.

브뤼셀보충기금협약을 통해 서유럽국가들은 자국의 손해배상한도(3억SDR)¹⁾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체결국들이 공공기금을 거두어 1억2천5백만 SDR을 사고발생국에게 제공함.

2.2.2 비엔나협약체제 (The Vienna Regime)

동유럽, 러시아 및 IAEA 회원국 중심의 체제로서 1977년 11월에 발효되어 원자력손해배상의 특별원칙들을 역시 다 반영하고 있으며, 협약체약국은 그러한 특별원칙을 자국법으로 반영해야 함. 1997 개정 비엔나협약은 원자력운영자의 책임한도를 최저 3억SDR까지 인상하였음.

2.3 CSC체제의 등장

2.3.1 CSC체제의 등장배경 및 내용

체르노빌 사고이후 비유럽국가들간의 국제원자력손해발생시 국제기금을 통한 협력강화가 필요하게 되어 IAEA와 미국주도로 CSC가 등장함.

1) SDR(Special Drawing Right):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한 출권으로서, 2015년 7월 8일 기준 3억SDR은 원화로 약 4730억원 정도임.

Table 1. CSC Main Contents

Adoption and Effect	-Adoption: Sep. 12. 1997 -Effect: April 16. 2015 -Member countries: 7 Countries (USA, Japan, Argentina ,UAE, Rumania, Morocco, Montenegro)
Structure	Main text(27 Clauses) and Appendix (11 Clauses)
Special feature	Non nuclear country can join and most nuclear liability special doctrine is included.
Compensation	Minimum 300 million SDR, Member countries' public funds mechanism

CSC는 체약국이 국내 원자력시설 운영자의 엄격 책임제도 및 최소 3억SDR의 보증책임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약국들의 공공기금 출연에 의해 보완적 보상을 제공함.

2.3.2 CSC의 의의

CSC는 원전미보유 국가도 가입하여, 체약국들의 공공기금을 통한 자국내 영토 및 영해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비가 가능하며, 체약국들이 자신의 원전보유비율에 따라 사고 체약국에 공여하는 공공기금을 부담하게 되며, 그 공공기금의 50%는 반드시 초국경적으로 타 체약국 손해배상에 투입됨.

현재 캐나다도 의회비준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환태평양 원자력손해배상 메커니즘의 주요 틀로써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며, CSC의 본격적인 발효를 통해 원전도입국들의 원자력손해법제 구축이 용이해져, 원자력시설 도입 여건이 개선됨.

2.3.3 일본의 CSC 가입 분석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향후 원전사고 시에 주변국의 피해배상에 있어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필요가 시급해져 2015년 국회비준을 받아 가입을 완료함.

일본은 CSC 가입을 위해 2014년 11월 28일 '원자력손해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및 '원자력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CSC에 부합하는 법률개정을 함.

2.4 한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제와 CSC 대응

2.4.1 한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현재 한국은 원자력손해배상협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국제원자력손해배상의 주요원칙을 반영함.

-원전 운영자에게는 3억SDR의 배상조치액을 상시 보험으로 유지토록 함.
-원자력시설운영자의 무과실책임, 책임집중, 배상조치의 강제, 환경손해인정 등 국제협약의 주요개념을 다 포함함.

2.4.2 한국에 주는 시사점

-중국의 CSC 가입동향 파악
CSC에 한국이 가입하기에 앞서 국제협약이 통상체약국 내에서만 적용하므로 중국의 가입 없이는 CSC의 본격적인 태평양 지역체제로서 작동하기에 어려움이 따름.

-예산 및 재정

CSC에 가입할 경우 공공기금의 부담주체를 국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예산 및 재정

-재판관할권

CSC의 사고국 재판관할권 보유조항은 주변국 사고시 한국피해에 대해서도 타국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게 되는 단점도 있음.

-원전 수출국 위상강화

CSC가 발효되어 원전도입국의 원자력손해배상체제 편입이 용이해져, 원전수출국인 한국의 가입은 상징적 의미가 있음.

-원전 이외 원자력시설 상시 보험증액

CSC가입 시 정부가 원전외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도 3억SDR의 배상능력을 보증해야 하므로, 연구용 원자로, 방폐시설에 대해서도 비용부담이 예상됨.

3. 결론

CSC는 일본의 가입으로 발효되어, 환태평양 주변 지역의 원자력손해배상체제로써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은 중국의 협약가입과 공공기금 재정 부담 및 재판관할권의 통일에 대해 범 정부부처 협의회를 구축하여 대응이 필요할 것임.

4. 참고문헌

[1] 박기갑, "국제보충기금협약가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검토, 외교통상부 정책과제 보고서, 2012.
[2] 이대성, 국제적수준의 원자력손해배상 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1.6.